장공련 사무연락

2021년 10월 15일

산하 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사무국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ISO18861 Cosmetics - Sun protection test methods - Percentage of water resistance(화장품 – 선텐 방지 효과 시험법 - 내수성(SPF의 유지율))”의 발행에 따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2021년판>“(이하, 본 기준이라고 한다)을 자율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6월 15일자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 제정에 관한 의견 모집에 대하여”를 장공련 사무국에서 발송하여, 장공련 산하 회원사 여러분께 의견 및 질문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22건의 의견・질문이 접수되었으며, 별첨과 같이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율기준 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과 의견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별첨**

|  |  |  |
| --- | --- | --- |
| **항목** | **질문 및 의견** | **답변** |
| **시험법** | **질문 1** 내수성 측정과 기존 SPF 측정은 동시에 실시된 시험이 아니면 표기할 수 없는가?  **(이유)** 이미 출시된 제품에서 이미 측정된 SPF 값은 다시 측정 시 측정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답변 1** SPF 표기와 내수성 표기를 할 경우, ISO18861의 시험결과에 따라 SPF 표시와 UV 내수성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질문과 같이 이미 SPF 표시를 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새롭게 이번 UV 내수성 표기를 추가하기 위해 ISO18861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기존 SPF 표시를 ISO24444(2010)의 구 버전에서 실시했다면 ISO24444(2019)의 최신 프로토콜이 반영된 ISO18861의 측정 결과를 우선 적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측정값의 취급은 ISO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2** 내수성 ☆과 ☆☆의 시험시간 횟수가 다른데, 단일 피험자에서 동시에 ☆와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답변 2** 피험자 시료 도포 시기를 늦추면 프로토콜상으로는 실시 가능하겠지만, 수화 후의 피부 표면에 시료를 도포하는 것이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측정값의 취급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수성 표시** | **질문 3** 왜 내수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 혹은 ☆ 마크일까요?  **(이유)**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SPF나 PA와 동일한 “+”는 안 되는 건가요? 또한, ★ 혹은 ☆ 마크는 별 3개 등의 이미지가 앞서기 때문에 우위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도 단순히 “+”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 **답변 3** SPF나 PA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험법에서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편, 내수성 표시는 각각의 조건에서 내수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성격이 다른 표시가 됩니다. 기존 +표시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기일 경우 PA표기와 병기했을 때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PA++++에 대해 UV 내수성++가 열등하게 보일 우려가 있고, 또한 신규 효능효과로 인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표기가 아닌 ★ 또는 ☆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
| **질문 4** UV 내수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유)** [자외선 내수성]이라는 것이 일본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외선이 가지는 내수성] 혹은 [자외선에 의한 내수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 자신은 자외선 차단제의 내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 [ ] 내의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SPF나 PA라는 용어가 애초에 일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WR-UVP(Water Resistance for Ultra Violet Prevention) 등 머리글자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 4** 이것은 화장유지 등의 내수성과 구별하기 위해 “UV Protection의 내수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UV 내수성”으로 나타냅니다. 유럽의 표시 방식과 동일한 시험법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Water Resistant, Very Water Resistant 및 그 머리글자 등의 표기(가타카나 표시도 포함한다)도 검토했지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동일한 표현이 업계에서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어 온 경위도 있어, 일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의 WR-UVP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본의 표시로는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UV 내수성”은 새로운 표시이지만, 내수성의 의미와 강약을 명확히 하고, 표시 공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기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질문 5** 2. 내수성 표시에 대해서, 본 표1에 표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지1의 4. SPF와의 병기와는 다른 표기법입니다. 이쪽은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이유)** 정확한 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틀림이 없는 광고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답변 5**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기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별지 1의 4에서는 내수성 표시를 SPF와 함께 표기해 줄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별지 2의 2에서는 그 구체적인 표시 예를 표1에 예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자율기준의 표기방법으로는 표1에 있는 예를 참고하여, 본 기준에서 정한 “UV내수성★(또는 ☆)”과 “UV 내수성★★(또는 ☆☆)”의 2단계 표시 중 하나와 SPF 값을 병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지 1의 4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 **내수성 표시(계속)** | **질문 6** 40분의 수욕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표기로서 “★☆”과 같은 표기는 허용되나요?  **(이유)** 염색약의 밝기 표기 등에서 간혹 보이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6** ★와 ☆의 표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의견수렴에 앞서 장공련 포토프로텍션부회 내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 별 2개를 ★☆, ☆★와 같이 검은색 별과 흰색 별을 함께 표기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기준에서는 검은색 별과 흰색 별의 표기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별 1개를 ★☆, 또한 별이 없는 것을 의도하여 ☆☆로 표시하면 별 2개 표기와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별 2개를 ★☆와 같이 ☆을 별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7** 표기방법은 “UV 내수성 ★★”(검은색), “UV 내수성 ☆☆”(흰색)의 경우, ★나 ☆의 색상을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이유)** 상품 패키지에 따라 흑백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 | **답변 7** 별 표기 부분을 특수문자 별(검은색 ★) 또는 별(흰색 ☆) 중 하나의 특수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자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별 표기 부분만 글자 색을 변경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8** 반드시 SPF와 병기로 알고 있는데,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하는 등 기준을 수립할 생각인가요?  **(이유)** “내수성 ★★”을 크게 함으로써 내수성 표기만 눈에 띄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답변 8**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UV 내수성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준에 의해 표기되는 자외선 차단 효과의 내수성은 SPF의 유지율에 따라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욕 후 자외선 차단 효과의 강도는 내수성뿐만 아니라 원래의 SPF 성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욕 후의 자외선 차단 효과의 강도는 본 기준의 내수성 표시와 SPF 표시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6)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 **질문 9** 별지 2-2에 “내수성을 제품 등에 표시할 때 ~ 반드시 SPF와 함께 병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로, 세로로 기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같은 면이라면 괜찮을까요?  기재 공간이나 제품 컨셉에 따라서는 조금 멀리 기재하고 싶다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변 9** SPF와 UV 내수성의 표기를 따로따로 표기하지 말고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0** 별지 2-2 표 1: UV 내수성 표시 예에 대해서, 표시 예에 없는 “UV 내수성”의 표기가 SPF보다 앞선(SPF의 위쪽 또는 왼쪽)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나요?  또한, SPF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도 내수성만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나요?  내수성이 신규성이 있는 표시인 경우, 눈에 띄게 표시하고 싶다는 고객 요구가 예상됩니다. | **답변 10** "자외선 차단" 표기가 SPF보다 앞서도(SPF의 위쪽 또는 왼쪽) 무방합니다. 유의사항 표 1의 표기 예도 추가했습니다. 단, UV 차단 기능을 강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1** 별지 1, 2에 관해, UV 내수성 표기방법에 ★와 ☆ 이외의 것을 추가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숫자 표기 등  **(이유)** 제품 디자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답변 11** 표시를 통일하는 것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선택의 기준으로서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마크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 **기타 표시** | **질문 12** 2. 내수성 표시 (2)에서 UV 내수성★★★과 같은 표기나 본 기준의 내수성 표시를 대신하여, Waterproof를 병기하는 등 본 기준과 다른 표시를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 (3)에서 다른 부분에 자외선 방지 효과에 대한 내수성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을 추가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과 다른 표시를 하지 말라고 기술한 바로 뒤에 다른 표현을 추가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표현이 ★ 또는 ☆, ★★ 또는 ☆☆와 동등한 정도의 표현임을 나타낼 필요는 없나요?  본 기준의 표현이 어딘가 있다면 다른 곳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답변 12** 이번 자율기준 안내에서 새로운 내수성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새로운 내수성 표시와 지금까지 각 사가 실시해 온 내수성에 관한 설명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수성 표시에 대해서는 “UV 내수성 ★★★” 등의 표기방법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별지 2의 2(2)에서는 본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내수성 표기 방법, 즉 SPF와 함께 내수성을 표기할 때는 여기서 설명한 새로운 내수성 표시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의 2(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사에서 해왔던 내수성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에 고려해야 할, 본 기준에서 정한 위치와 다른 곳에 내수성 설명을 할 때의 주의 조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2(3)에 있는 다른 곳(SPF와 병기되지 않는 곳)이라면 내수성에 관한 다른 표현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각 사의 표시가 각각 달라서, 새로운 UV 내수성 표시를 도입 시 그 정합성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Waterproof” 등 표현의 다른 부분에서의 사용을 이번 자율규제에 의해 제한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UV 내수성★에 대해 기준이나 척도를 나타내는 표현(Super, Very 등)을 사용하면 우수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UV 내수성 ★★의 제품들 간에 우열을 가리는 표현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3** UV 방수 표기 외에 ★나 ☆를 상품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유)** 디자인으로서 ★와 ☆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 | **답변 13** 가능합니다. 단, UV 내수성 표기의 별 표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사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4** 각 사의 기준에 따른 “땀이나 눈물, 물 등에 잘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Waterproof”라는 문구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표시해도 될까요?  기재해도 좋지만 조건이 있다면, 내수성 기준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공련 홈페이지나 적정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사에서 판단하면 각각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 14** 메이크업 제품의 메이크업 지속력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기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각 사에서 보증한 표기를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는 표현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외선 차단 효과와 관련하여 내수성과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효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5** 메이크업 제품에 Waterproof 표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표기방법에 있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제조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제한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유)** 자외선 차단 ★★표기와 메이크업 제품의 내수성(Waterproof) 표기가 함께 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 | **답변 15** 메이크업 제품의 메이크업 지속력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기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UV 내수성 표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각 사가 보증한 표기를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은 표현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외선 차단 효과에 관한 내수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은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효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기타 표시**  **(계속)** | **질문 16** 별지 2-2에 “메이크업 화장품의 메이크업 지속 효과에 관한 내수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기재가 있는데, 메이크업 화장품의 파운데이션에 SPF, PA 표시를 한 경우,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혼동되지 않게 한다면 표시해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내수성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면, 앞으로도 SPF・PA 표시를 기재한 메이크업 화장품에 땀에 강하다는 의미의 “Waterproof”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메이크업 제품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문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답변 16** 메이크업 제품의 메이크업 지속력에 관해서는 이번 자율기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UV 방수 표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각 사가 보증한 표기를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은 표현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외선 차단 효과에 관한 내수성과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은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효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질문 17** 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기준인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 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내수성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을까요?  또한, SPF・PA 표기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대상 제품의 내수유지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17** 자외선 차단 효과를 표시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외선 차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각 사에서 보증한 표기를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는 표현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외선 차단 효과에 관한 내수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은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 효과의 내수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18** UV 내수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SPF 표기 주변에 “물, 땀, 눈물 등에 강하다” “Waterproof” 등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이유)** UV 내수성★★을 평가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메이크업 제품의 내수성 표시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 | **답변 18** 메이크업 제품의 메이크업 지속력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기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UV 방수 표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각 사가 보증한 표기를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은 표현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외선 차단 효과에 관한 내수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은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효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SPF 표기 부근에 대해서는 UV 내수성 표시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비자에 대한 대응** | **질문 19** UV 내수성 ★★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문서 기재 예는 작성해야 하나요?  **(이유)** UV 내수성★★에 대해서는 처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문의가 예상됩니다. 그 때, 업계의 통일된 답변 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 19**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문서 기재 예 등을 작성할 계획은 없지만, 새로운 UV 내수성 표시에 대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 시기로는 UV 내수성 표시의 시작이 2022년 12월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시기를 보고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공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질문 20** 본 기준 관련 설명회는 2021년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요?  **(이유)** 내수성★★은 처음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 20** 새로운 UV 내수성 표시에 대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 시기는 UV 내수성 표시의 시작이 2022년 12월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시기를 보고 홍보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공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는 준비 관계로 2022년 연초로 개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 **기타** | **질문 21** 기존 각 사의 기준에 따라 내수성 표시를 한 제품의 출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표시 내용이 메이크업 제품의 내수성 표기만 있는 경우 출하 종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유)** 기존 메이크업 제품의 내수성 표기 방식이 업체별로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의 내수성으로 오인하는 제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답변 21** 표시내용이 메이크업 제품의 내수성 표기만 있는 경우, 2024년 11월 30일 이후에도 출하 종료 범위 외가 됩니다. 단, 이러한 제품에서는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내수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22** 본 기준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자율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 후 기준에 어긋나는 표현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 **답변 22** 본 자율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국내 화장품업계에서 표시를 실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이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자외선 차단의 내수성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업계 입장에서 일반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공련 산하 회원사 외의 기업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의 내수성 표시를 할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